기술지원협약서

○ 사 업 명 : 대구시설공단 본사 출입통제시스템 설치
○ 발주자(갑) : 대구시설공단
○ 협약업체(을) : 우경정보기술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(대구시설공단 본사 출입통제시스템 설치)에 대하여 "갑"은 발주자로서 "을"은 제조사(또는 공급사)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 및 협약의 범위)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.
② 위 물품 중 "을"이 낙찰자에게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(시방서)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·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.
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 ·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"갑"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금액) 제2조의 규정에 따른 "을"의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 ·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"갑"과 "을"이, 협약 항목 Tmax(미들웨어) 및 Tibero(데이터베이스)의 협의 하는 금액(₩8,800,000원)부가세 포함으로 한다.

제4조(기술지원확약서 발급) 위 사업의 낙찰자와 "을"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, "을"은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2021년 11월 일

"갑" (대구시설공단) (인)

"을" 우경정보기술 (인)